

2022년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전북) 시행계획

I 세부사업 구성 및 신청접수 안내

■ 공고대상 사업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4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11
③ 전북테크비즈센터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18
④-①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기술이전 R&BD)	25
④-②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후속고도화, 기술이전 R&BD)	37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 지원 사업	48
⑥-①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사업	54
⑥-②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연구소기업 R&BD)	62
⑥-③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후속고도화, 연구소기업 R&BD)	72
⑥-④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K-선도 연구소기업 R&BD)	83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사업	96
⑧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103
⑨ 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사업	110
⑩ 미래 신산업분야 특구기업 육성사업	117
⑪ 특구기업 실용화 검증 지원 사업	125
⑫ 혁신성장 클러스터 육성 사업	132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공고문 및 관련 서식 다운로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www.innopolis.or.kr),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공고기간 및 사업별 접수기간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사업		
- 지역성장 네트워크	'22. 02. 08.(화) ~ '22. 04. 29.(금)	'22. 04. 01(금) ~ '22. 04. 29(금), 15:00까지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사 업 명	공고기간	접수기간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④-① 기술이전 R&BD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④-② 기술이전·BM 후속고도화	`22. 02. 08.(화) ~ `22. 05. 11(수)	`22. 04. 25(월) ~ `22. 05. 11(수), 15:00까지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 지원사업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⑥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		
⑥-①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1차마감 : 04.29(금), 15:00 *2차마감 : 05.31(화), 15:00
⑥-② 연구소기업 R&BD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⑥-③ 후속고도화('21년 연구소기업 R&BD 신규선정 과제 대상)	`22. 02. 08(화) ~ `22. 05. 11(수)	`22. 04. 25(월) ~ `22. 05. 11(수), 15:00까지
⑥-④ K-선도 연구소기업 R&BD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⑧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1차마감 : 04.29(금), 15:00 *2차마감 : 05.31(화), 15:00
⑨ 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⑩ 미래 신산업분야 특구기업 육성*	`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1차마감 : 04.29(금), 15:00 *2차마감 : 05.31(화), 15:00
⑪ 특구기업 실용화 검증 지원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⑫ 혁신성장 클러스터 육성	`22. 02. 08.(화) ~ `22. 03. 10.(목)	`22. 02. 21(월) ~ `22. 03. 10(목), 15:00까지

*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지원 사업,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사업, 미래 신산업분야 특구기업 육성 사업은 접수결과,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에 지원 마감될 수 있음

■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접수방법) 사업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개별사업 마감 시한까지 접수

* 접수마감 종료일에는 제출 소요시간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여유있게 접수 바랍니다.

○ 접 수 처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세부사업별 담당 및 문의처

○ 사업 담당부서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및 기획경영실

사 업 명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①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② 혁신주체 네트워크 운영			
②-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오종석 선임연구원	063-905-9742	brightwish@innopolis.or.kr
②-②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③ 교류협력공간 운영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4	ljk4002@innopolis.or.kr
④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④-① 기술이전 R&BD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④-② 기술이전·BM 후속고도화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⑤ 연구소기업 애로해결지원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4	ljk4002@innopolis.or.kr
⑥ 연구소기업 역량강화(R&BD)			
⑥-① 연구소기업 씨앗자금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⑥-② 연구소기업 R&BD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⑥-③ 후속고도화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⑥-④ K-선도 연구소기업 R&BD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⑦ 액셀러레이팅 지원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⑧ 첨단기술기업 성장지원*	최진희 연구원	063-905-9743	skyhee10@innopolis.or.kr
⑨ 기술사업화기업 성장지원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⑩ 미래 신산업분야 특구기업 육성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⑪ 특구기업 실용화 검증 지원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⑫ 혁신성장 클러스터 육성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 기타사항

○ 세부 사업별 지원대상, 지원내용·조건, 접수방법 등은 “Ⅱ. 세부사업별 시행계획”에 따르며,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소관부처 정책에 따라, 사업지원을 위한 협약체결 전에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될 경우는 신규 법령 및 규정이 사업에 적용될 수 있음

II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 유망기술 및 연구소기업 출자 가능기술을 수요기업에 적기에 연계·공급하여 공공기술의 이전·출자 활성화

☐ 사업내용

- 유망기술 발굴, 기업수요 분석 등을 통해 매칭가능한 공공기술을 발굴하고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등 사업화 연계활동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70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최대 35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사업화전문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함) / 컨소시엄 구성 가능

- 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18조에 의한 연구개발서비스업
- ②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법인
- ③ 특허법인 또는 기술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간법인(기술거래기관 이외의 민간법인은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기술이전·사업화 실적 3건 이상 보유)
- ④ 산업자원통상부 지정 기술거래기관

* 사업수행 인력규모는 최소 3명 이상(단순 사무직원 제외)으로 구성

**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이 최소 1명 이상, 총괄책임자 및 실무책임자는 참여율 합계 50%이상 이어야 함

* 선정되는 기관은 전북특구본부 기술이전업무 지원을 위한 현지(전북지역) 업무협력 등 실행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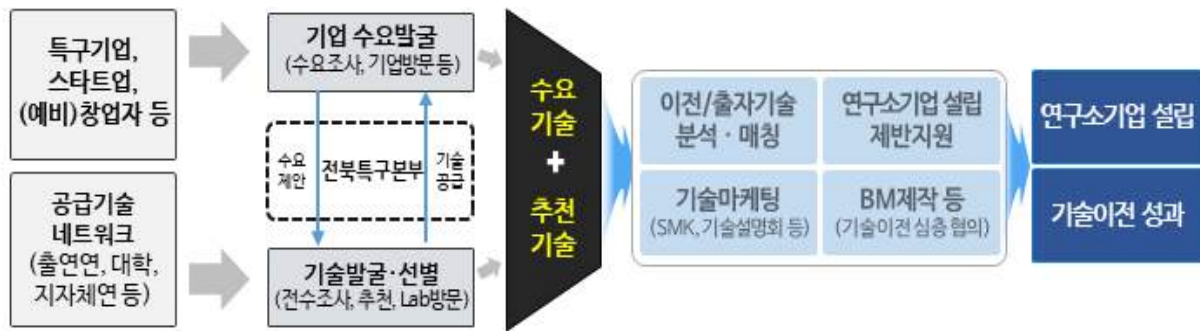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북특구 내외 공공연구기관의 유망기술 발굴 및 기업수요 분석·매칭, 기술마케팅, 사업화 목적에 적합한 BM 제작 등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지원

< '22년도 전북특구 기술발굴 및 연계 사업 프로세스 >



- (양방향 수요발굴) 기술/기업 네트워크 등을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술 및 기업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이전·출자 수요 발굴
 - * 전북특구본부와 협력하여 특구기업을 조사·방문하여 기업수요·현황·애로사항을 파악
- (중점분야 이전출자) 탄소중립, DNA 등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중점 분야의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지원 (성과목표 '신청서식' 참조)
- (검증 강화) 이전·출자 기술에 대한 사업화전략, 사업계획, 투자로드맵 수립 등을 지원하고, 수립된 BM의 고도화를 위해 검증절차 강화
 - * 세부방법 및 절차는 전북특구본부와 협의
- (후속지원) 기술이전 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질적성장을 위해 필요한 수요를 파악하고 특구사업, 타기관 지원사업 등 사업화 연계 지원

<프로세스별 중점 지원범위>

연구소 기업 설립	◦ (설립주체 협력) 전북특구 내외 공공연구기관 등 네트워킹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여, 특구내외 우수기술의 중·대형 기술이전·출자 추진 ◦ (우량 연구소기업 설립)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양질의 연구소기업을 기획·설립 - 우량 설립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

기술 이전	◦ (기술매칭/마케팅) 발굴된 유망기술을 선별하고 특구내·외 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기술매칭·이전 추진 및 컨설팅 지원 - 선별·매칭된 기술의 SMK(범용 BM형태)와 BM(R&D로드맵 포함) 작성·제공 -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기술포트폴리오를 설계·검토하여 기술패키징 이전을 강화 → 중대형 기술이전 체결 지원 ◦ (마케팅 강화) 다각적(온오프라인) 기술마케팅을 통해 기업수요를 파악하고, 기술공급자-수요자간 기술매칭 프로그램 운영 및 기술이전 지원 - 유관기관(TP 등) 및 특구간 기술교류를 연계하는 설명회, 상담회 등 개최 ◦ (유망Lab 연계) 대학·연구기관의 유망Lab을 조사하여 DB화하고, 연구자/기술 등 핵심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수요와 선제적 매칭
------------------	---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 및 기업 발굴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화 및 연구소기업 출자 유망기술 발굴, 수요기업과 매칭, 비즈니스모델 및 사업계획 마련 등 기술이전/출자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 전북특구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 사전 준비정도	25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15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업무분장,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특구 타사업과의 연계 전략	15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사업추진의 성공 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 기술사업화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구성·운영을 통한 협력사업 발굴 추진 및 기업성장 지원

□ 사업내용

- 전북특구 혁신주체*를 대상으로 “지역성장 네트워크”와 “기술사업화 네트워크”로 구분하여 운영

* 전북특구 산·학·연·관 혁신주체(창업기업, 특화기업, 지원기관, 기술·금융전문가 등)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170백만원 이내

- 네트워크 분야별 1개 수행기관 선정(각 수행기관별 컨소시엄 구성 가능)

분 야	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②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특구 육성자문단	기업지원네트워크	기술금융분과
지원규모	최대 90백만원 이내 (1개 기관)		최대 80백만원 내외 (1개 기관)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10개월 이내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 해당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여부, 지원규모(정부출연금), 사업기간 조정 가능

□ 신청자격 : 산·학·연 네트워킹 운영 경험 및 역량을 보유한 기관·기업

* 기업협의체, 지주회사,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정책연구 전문기관, 대학교 등

□ 수행기관 수행내용

① 지역성장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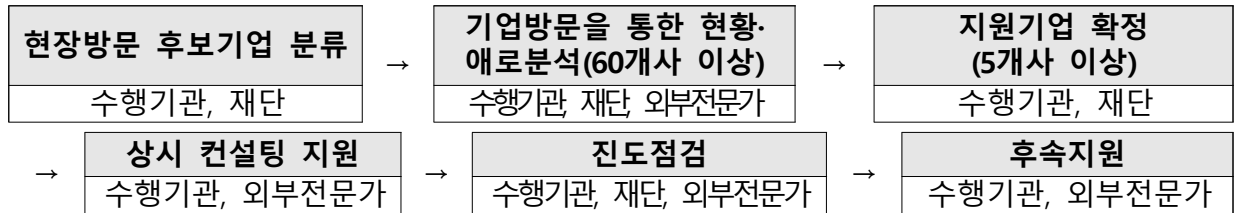
- 육성자문단 네트워크 구성*, 콘텐츠 기획·운영, 우수사례 발굴·홍보 등

* 既 구축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구성원 추가 가능

운영위원회 개최(1회 이상)	육성자문단 운영(2회 이상)
육성자문단 구성원 및 연중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확정 등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관간 정보교류, 신규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방안 논의, 기업탐방 등

- 수행기관의 외부전문가 POOL(육성자문단 위원 포함)을 활용한 현장 애로해결 조사·진단, 경영·기술 등 기업 맞춤형 컨설팅, 타 기관 정부지원사업 연계 등

* 현장중심형 의견수렴을 위해, 재단 및 육성자문단의 사업참여(기업탐방, 진도점검 등) 예정



②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 기술금융분과 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시 정보교류를 통해 유망기업 발굴, 투·융자 연계·협력 등을 통한 전북권 기술금융 생태계 강화

* 기술금융분과위원회 : 창업기관, 투자자, 금융기관 등 既 구축한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며, 신규 구성원 추가 등 구성원 조정 가능

- 지역 기업 발굴 및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투자IR 개최 및 투자자 (VC, AC 등)와 연계한 상담회 운영과 후속 네트워킹 등 사후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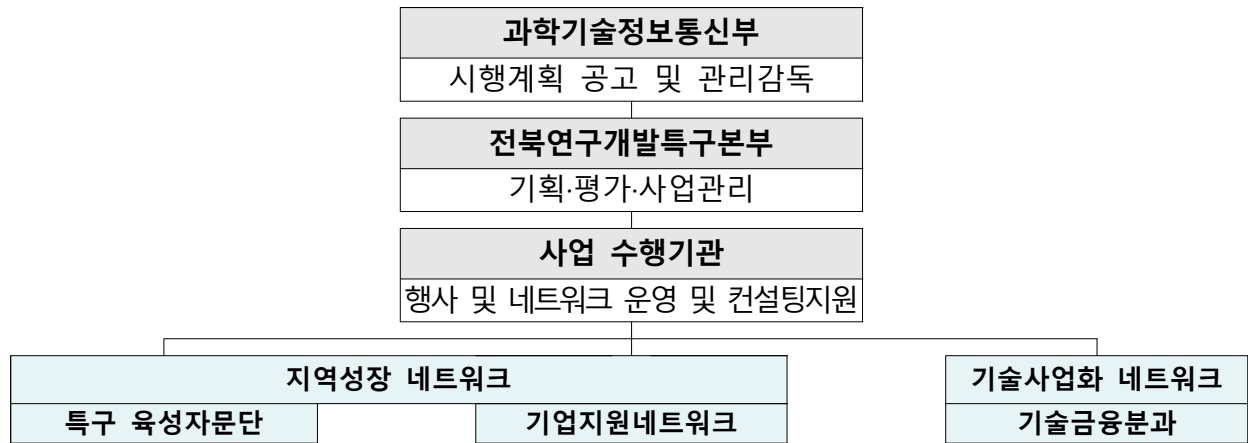
구 분		참여대상	주요내용	주요지표	비고
지역성장 네트워크	①특구육성 자문단	지자체, 출연(연), 대학교, 기업협회, 유관기관 등	상생형 동반성장을 위한 오피니언 리더 네트워크 운영 - 신규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 기업애로해결기업탐방 등	네트워킹 기획 (운영위원회) 1회 네트워킹 운영 (육성자문단) 2회 기업탐방 2회	90 백만원 이내
	②기업지원 네트워크	전북특구 기술기반 기업, 재단 수행기관 외부전문가 등	특구기업 대상 현장 애로사항 청취 및 컨설팅 지원 -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	기업방문을 통한 현황애로분석 60개사 컨설팅 지원 5개사	
기술 사업화 네트워크	③기술금융 분과	특구기업, VC, AC, 투자, 금융기관 등	기업 IR 및 투자자-피투자자간 투자IR, 투자상담 및 네트워크 지원	분과운영 4회 IR 및 상담회 4회	80 백만원 내외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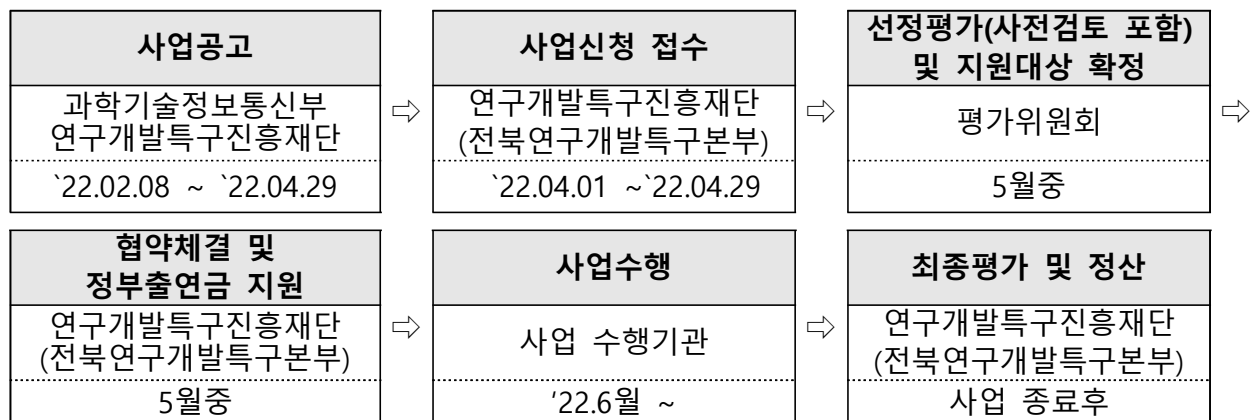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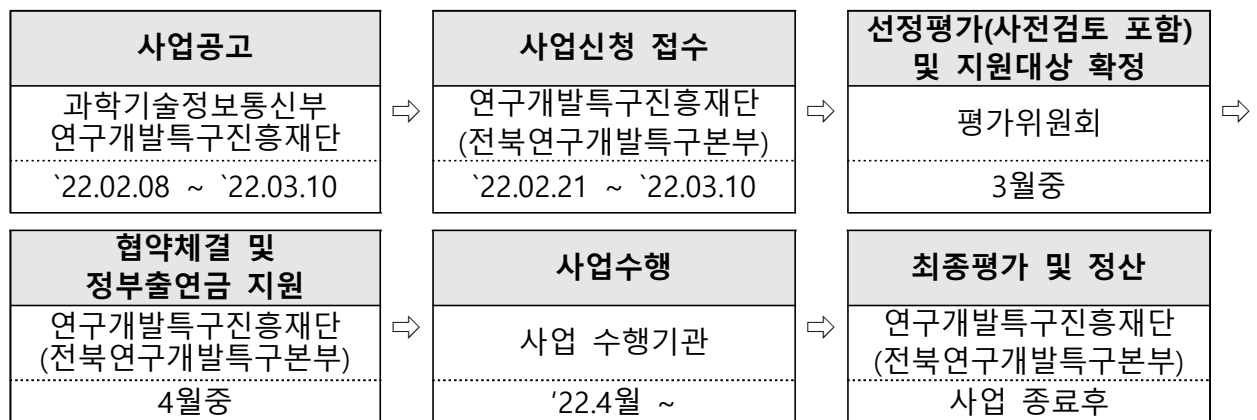
□ 추진절차 및 일정

○ 지역성장 네트워크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수행역량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 포함)의 수행역량 및 준비정도	15
	• 수행기관의 유사사업 추진 실적	15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20
	• 사업 추진전략의 차별성 및 타당성	20
운영계획 및 성공가능성	•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 수행체계 및 추진일정의 효율성	10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4. 29(금)

○ 접수기간

- (지역성장네트워크) 2022. 04. 01(금) ~ 2022. 04. 29(금), 15:00 까지

- (기술사업화네트워크)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 기술사업화팀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비고
기획 경영실	오종석 선임연구원	063-905-9742	brightwish@innopolis.or.kr	지역성장 네트워크 사업신청 및 문의
기술 사업화팀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사업신청 및 문의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테크비즈센터 내 교류협력공간 운영을 통해 혁신주체간 협력, 기술창업 촉진, 스타트업 육성 등을 지원하여 창업허브 역할 강화

* 일반인, 연구자와 창업자, 투자자 등이 소통·협력할 수 있는 개방형 열린공간 운영

□ 사업내용

- 교류협력공간 관리·운영 및 비즈니스 아이템 구체화, 네트워킹, 투자콘서트, 비즈니스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

< 전북테크비즈센터 2층 교류협력공간(비즈카페) 운영시설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20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교류협력 공간 운영, 교육·기업진단, 컨설팅, 창업/문화 콘텐츠 기획·운영 실적이 있는 기업 또는 기관(컨소시엄 구성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 전담인력 인건비*, 시설 개선 등 교류협력 공간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

*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커뮤니티 매니저) 1명 상주 필수

□ **세부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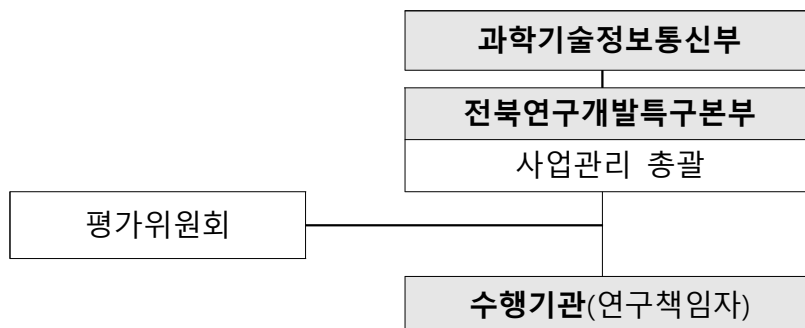
- **(시설 운영·관리)** 교류협력공간(Biz-Cafe)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및 환경구축, 기자재관리, 이용자 편의제공, 안전관리 등
 - * 공간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화상회의실, 스튜디오, 빔프로젝트 설치 등) 및 운영지원
-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북테크비즈센터 입주기업·기관,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창업정보교류, 협업네트워킹, 세미나, 컨설팅 등 연간 지속운영되는 'Biz-Cafe'만의 특화 콘텐츠 프로그램 기획운영
 - * 코로나-19 등 외부환경에 따른 온·오프라인 간 유기적인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특구내 (예비)창업자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네트워킹 행사, 성과 공유회, 교류협력 세미나, 전문가 강연 등 정보교류 행사 등
- 분야별(기술, 투자, 경영, 세무, 인증 등) 전문가 Pool 구축하고 Biz-Cafe 이용자에게 상시 멘토링 추진
- **(코디네이팅)** 기술사업화를 위한 종합정보(유망기술, 트렌드, 유관 기관 사업화/행사 등) 제공 및 전담인력을 통한 코디네이팅 지원
- **(홍보)** 사업화전문기관, 창업 유관기관,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인프라(입주·코워킹 공간 등)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한 홍보 추진
- **(연계협력)** 창업 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공동프로그램 및 공간지원
 - 이노폴리스캠퍼스, 액셀러레이팅 사업 등 특구육성사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IR, 교육, 밋업프로그램 등 공간운영 지원
 - 지역 혁신기관과 연계한 협력네트워킹 행사 및 공동프로그램 운영 등
- **(이용자 관리)** 교류협력공간 이용자 출입관리, 이용현황 통계분석, 만족도조사 등 이용편의 개선
- **(기타)** 특구재단의 미션 및 역할과 관련하여 재단이 요청하는 사항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전북테크비즈센터 교류협력공간(Biz-Cafe) 시설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및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추진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 전문성 (30)	사업추진 의지 및 목표, 추진체계의 적절성	10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 보유 수준	10
	구성 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추진전략, 사업실적 등 적정성 (50)	프로그램 기획,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
	네트워킹 계획, 프로그램 기획, 홍보 방법 등 추진전략	20
	타사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 계획의 적정성	10
추진일정, 실현가능성(20)	회원관리 및 홍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추진일정의 적절성 및 유사사업 수행 실적 등	10

* 상기 평가기준 및 비중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4	ljk400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 · 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등 전략적 추진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016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등 전략적 추진과제의 경우 특구별 (기술이전 및 연구소 기업 R&BD 전체)신규 과제규모의 10%의 이내(1개 과제 내외) 범위에서 별도선정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2.5억원 이내 (총 6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공고기간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 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2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2.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내 기업 · 전북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를 추진하는 특구 내·외 기업 * R&D결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소유하여야 함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 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 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 | |
|---|
| <p>가. 국립연구기관</p> <p>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p> <p>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p>*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p> |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 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			3.5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효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효율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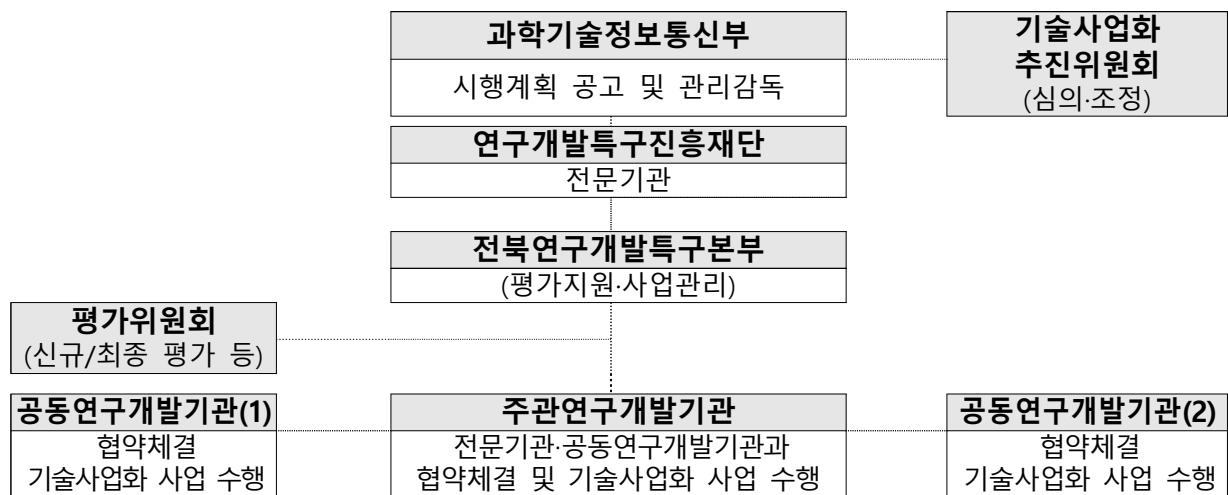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기술기여도	30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30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30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을 사전검토시 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5점 한도

- 신청일 현재 법인설립 7년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1점)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혁신성과) : 90점 이상”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1점)
-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녹색인증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첨단기술기업(3점)
- 전북특구 소재 기업이 전북특구 소재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이전 받아 신청하는 경우(2점)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시행한 기획형 창업 지원사업, AI 특성화 지원의 수혜를 받은 경우(5점)
 - ※ 해당 사업부서의 확인서(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에 한하여 인정
- ‘시장연계 유망기술 찾기 사업’, ‘수요자 중심 기술찾기플랫폼 사업’, ‘양방향 기술-수요 발굴 및 연계 사업’ 및 ‘전통기업 신사업 전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전 받은(또는 예정) 기술의 BM 수립 지원*이 완료된 경우(5점)

※ 지원 완료된 BM 리스트 별도 참조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에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2	기술이전계약서/의향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	-	기술이전계약 체결 전인 경우 기술이전의향서 제출
13	특허명세서	-	기술이전 대상기술에 한함
14	가점 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포함)	서식8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 · 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150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계속과제 예산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3.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1년 전북특구 기술이전·BM연계 R&BD 신규 지원 과제 수행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270호에 의해 지원된 과제에 한함,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2. 02. 08.(화) ~ 2022. 05. 11.(수), 15:00까지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③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④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 2021년 전북특구 기술이전 및 BM연계형 R&BD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2021년 R&BD 신규지원과제*의 최종평가에서「혁신성과」 또는「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¹⁾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			3.5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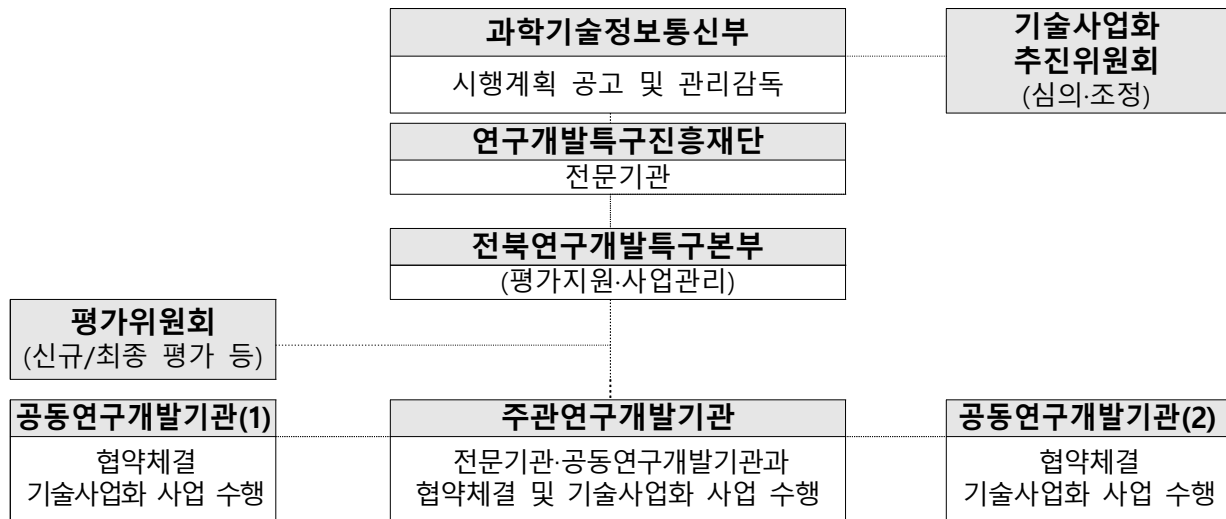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과제 연계성	• 신규지원과제('21년 1단계 과제) 수행결과의 우수성 및 후속고도화 과제와의 연계성	50	50
기술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5	1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5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5	15
	•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5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후속고도화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가.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 요약 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참여를 제한함 나. 2021년 신규 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예정 다.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라.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에 선정된 경우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행은 필수 사항이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과제 중단이 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후속고도화과제 접수 기간** : 2022. 04. 25(월) ~ 2022. 05. 11(수),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역량강화 및 사업화 애로해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기업의 질적 성장기반 마련

□ 사업내용

- 기업진단, 기술사업화 교육, 멘토링 등을 통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애로해결 및 질적 성장기반 마련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20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교육·기업진단 및 컨설팅 지원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권소사업 가능, 참여기관 1개로 제한)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 수행내용

- 교육·기업조사 역량진단 및 컨설팅 역량을 보유한 전문 수행기관을 통해 전북특구 연구소기업의 애로해결, 역량강화 등 종합지원
- (기업진단) 기업 역량, 사업화 준비도 등에 대한 기업진단을 통해 역량강화 지원 방향 수립 등 종합분석 및 기업별 현황 체계적 관리

* 기업진단, 기업현황 및 수요조사 등은 전북특구본부과 협의하여 진행

- (역량강화 지원) 연구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준비정도, 기업별 수요, 신산업(뉴딜, DX 등) 전환 등에 따른 맞춤형 교육·컨설팅 등 지원
- (애로해결 지원) 기업진단과 병행하여 기업별 애로를 단기해결 할 수 있는 시장/기술금융 정보제공, 전문가연계, 판로, 인증 등 종합 지원
- (네트워크 구축) 특구 내외 연구소기업 간 정보공유, 공동협력 촉진,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간담회, 세미나, 네트워킹 등 지원
- (기 타) 현장중심의 연구소기업의 현황관리, 조사(경영현황·수익금, 실태조사, 애로수요조사 등) 및 성장지원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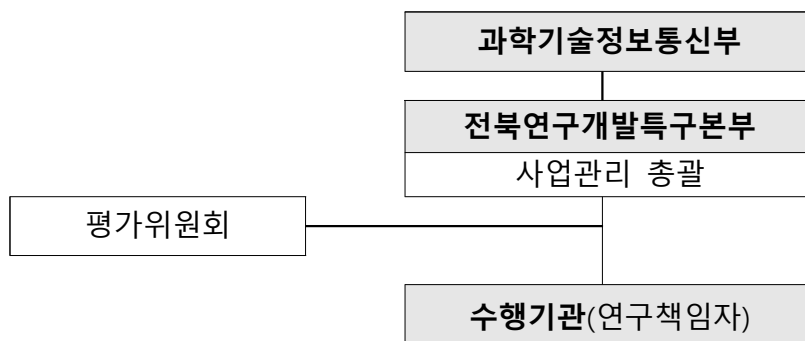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현장중심의 기업진단(평가) 및 현황조사를 통해 전북 특구 연구소기업의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추진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2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 및 내용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사업실적 (50)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10
	• 전북특구 및 연구소기업에 대한 이해도	10
	• 기업역량 개선 관련 실적 및 경험	20
추진일정, 성공가능성 (30)	•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15
	• 사업 추진일정 타당성 및 성공가능성	15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이진광 연구원	063-905-9754	lj4002@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역량향상 및 사업화 기반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의 BM 고도화, 아이템 구체화, 기술검증, 실증 테스트, 시장(고객)검증, 판로개척 등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Pre-R&BD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000백만원 이내

□ 지원규모 : 기업당 100백만원 이내(※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지원대상 :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예정인 연구소기업

- * 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R&BD)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소기업은 제외
- ** 등록 예정 연구소기업의 경우, 접수 마감일 이전까지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 등), 사업화전문기관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연구소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사업화·제품화 등 성장지원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단일 또는 패키지형태로 맞춤형 집중 지원

- * 원하는 지원내용을 선택하여 수행 가능하나, 제품개발 또는 시험분석 분야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지원분야	지원내용 (예시)
제품개발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특화제품 개발 지원, 기존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
시험분석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시제품 현장실험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홍보 영상,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망상품 기획, 기업·제품 홍보 수출자료제작 등
기 타	IR자료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⁴⁾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 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2021. 8. 13.)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보고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수시 (1차:~4.29, 2차:~5.31)	- 사업계획서 접수
세부 사업내용 평가	1차 - '21.5월 중 (2차 - '21.6월 중)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평가후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결과평가, 사업비 정산 등

* 추진일정 및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기술성	• 연구소기업의 출자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1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10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10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0
	•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및 연구소기업 운영 내실성	10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10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및 매출발생 계획의 적정성	10
	• 사업화 이후 고용·매출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금)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1차 접수기한 : 2022. 04. 29(금), 15:00까지

- 2차 접수기한 : 2022. 05. 31(화), 15:00까지

* 1차 및 2차 마감 후 접수할 경우 담당자 사전문의 요망, 예산소진시 마감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연구소기업등록증 (연구소기업 등록 예정 기업 : 등록 신청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소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하여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양산화) 과제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전환 등 전략적 추진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해 적극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016백만원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신규과제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등 전략적 추진과제의 경우 특구별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R&BD 전체)신규 과제규모의 10%의 이내(1개 과제 내외) 범위에서 별도선정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2.5억원 이내 (총 6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공고기간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15:00까지
지원내용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5~8)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2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2.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3에 따라 등록된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신청을 완료한 기업

* 공고 마감일 이전까지 연구소기업 등록 신청이 완료된 기업에 한하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			3.5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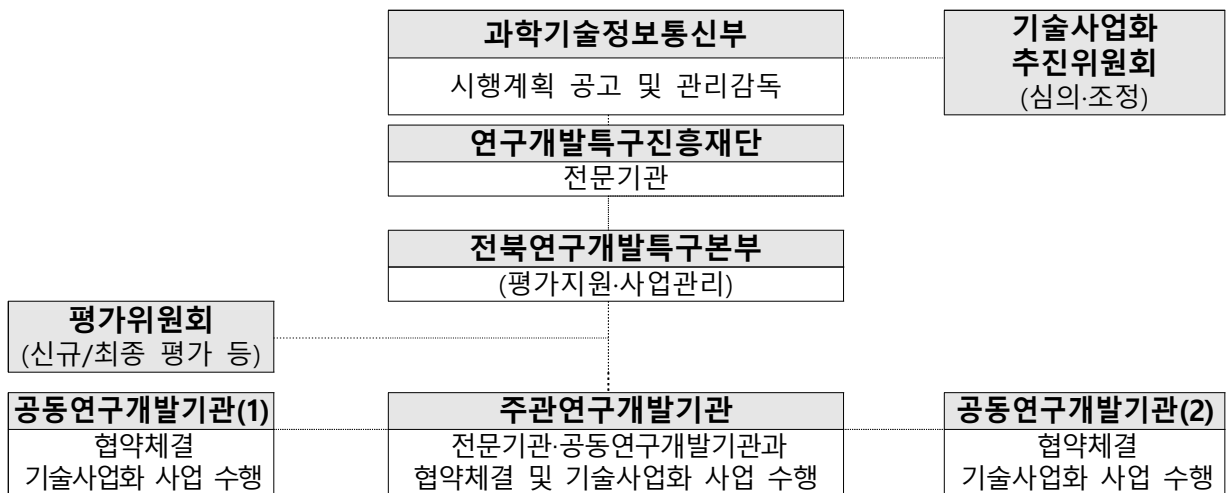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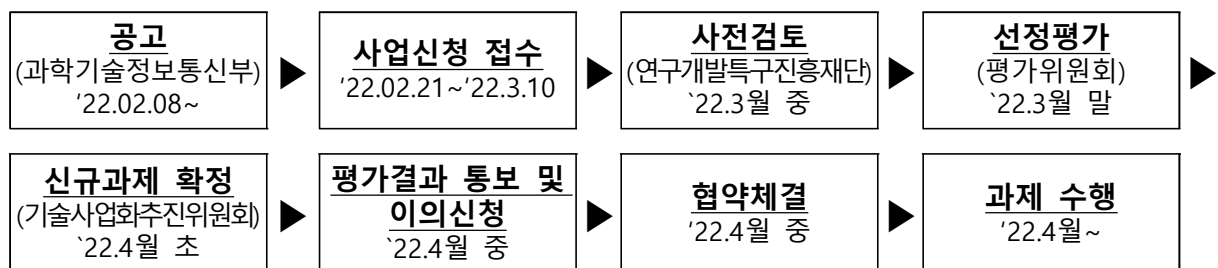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내용	계
기술성	• 이전기술의 비교우위성 및 권리보호 수준 • 이전기술의 사업화 수준 구현가능성 및 확장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기술기여도	30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30
사업화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기술 사업화 추진 적합성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30
사회적 가치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 사업화를 통한 정부정책(뉴딜, 탄소중립, 재난·안전 등) 연계성	1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전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피인용수, 패밀리수 등)을 정량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가결산재무제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2	연구소기업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13	특허명세서	-	출자 및 이전기술 중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특허의 명세서에 한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

□ 사업내용

- 공공기술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 · 신사업 진출을 위한 R&BD(제품화 · 양산화)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3,150백만원

- * 상기 예산은 기술사업화 역량강화와 연구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의 계속과제 예산 전체 과제 예산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부품 및 시스템의 시제품 성능검증, 시제품 성능 평가 지원 등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3.5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신청대상	2021년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R&BD 신규 지원 과제 수행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270호에 의해 지원된 과제에 한함, 세부내용 지원조건(지원대상 등) 하단 참조
공고기간	2022. 02. 08.(화) ~ 2022. 05. 11.(수), 15:00까지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한함 ②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③ 후속 고도화 지원 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 과제와 별도의 세부 과제임(단년도 협약) ④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사업구분	주관연구개발기관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 2021년 전북특구 연구소기업 R&BD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과제 선정 당시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요약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으로서, 2021년 R&BD 신규 지원과제*의 최종평가에서「혁신성과」 또는「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연구기관(대학·출연(연)·전문(연)) 등 관련 분야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가능

·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¹⁾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			3.5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 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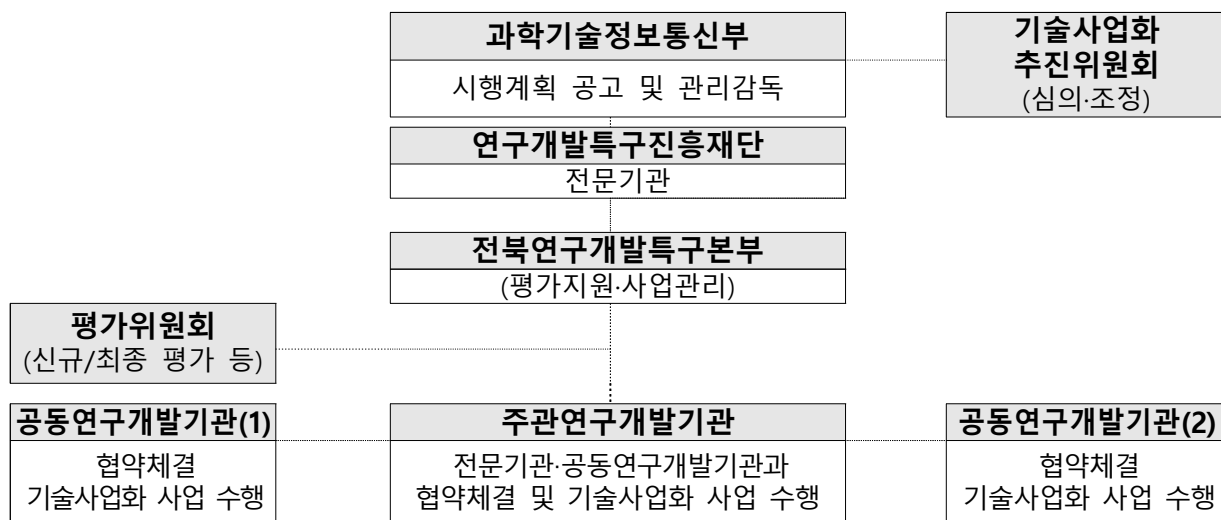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과제 연계성	• 신규지원과제('21년 1단계 과제) 수행결과의 우수성 및 후속고도화 과제와의 연계성	50	50
기술성	• 사업화 기술개발의 필요성과 경쟁력	5	10
	• 기술개발 목표 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정성	5	

평가항목	세부항목	비중(%)	계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체계성 및 사업목표의 타당성	5	15
	• 사업화 모델의 시장 진입 가능성	5	
	• 사업화 모델의 성장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적정성	5	
사업화 역량	•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5	15
	• 주관기관의 기술사업화 추진 적합성	5	
	• 사업화 지원의 타당성 및 필요성	5	
사회적 역할	• 신규고용(연구·사업화 등) 계획의 적정성	5	10
	• 사업화 이후 고용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5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후속고도화 지원과제	
가.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대상은 2021년 신규 지원과제 수행기관 중 사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사업 요약 계획을 제출한 기관으로만 참여를 제한함	
나. 2021년 신규 지원과제 목표 미달성 과제는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대상에서 사전 제외되며, 성과가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2022년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 지원 예정	
다.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는 전년도 신규 지원과제와 동일한 제품(기술)에 대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화를 지원	
라. 후속 고도화 지원과제에 선정된 경우 2021년 신규지원과제 수행에 따른 ‘사업비 정산’ 및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이행은 필수 사항이며, 만약 이를 불이행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과제 중단이 될 수 있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후속고도화과제 접수 기간 : 2022. 04. 25(월) ~ 2022. 05. 11(수),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혁신성 및 성장성을 갖춘 연구소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육성

□ 사업내용

- 성장가능성과 혁신성이 우수한 연구소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매출증대 및 투자유치 등 사업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한 스케일업 R&BD 과제 지원

2. 지원내용

□ 예산규모 : 2,500백만원

* 해당 예산은 전체 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의 신규예산 총액임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 등은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내용

- 글로벌 시장 진출 및 사업다각화 등을 위한 제품·서비스의 스케일업 R&BD 지원

* 예시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성능개선, 신뢰성평가, 시험인증, 해외시장 인증규격에 맞는 제품개발, 글로벌 IP 경쟁력 제고 등

구 분	세 부 내 용
'22년 출연금	과제별 5억원 이내 (총 10억원 이내)
지원기간	협약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 향후, 2단계 후속고도화 과제 연계 시, 추가 1년 지원 예정
공고기간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15:00까지
지원내용	시제품 신뢰성 평가 및 인증 등 실용화 지원(TRL 7~8)
기타사항 (중요)	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2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가능 ②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③ '22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2.4월~12월(9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④ 2022년 신규과제 신청기업은 2단계(2023년) 후속고도화 지원 사업을 연계하여 추진희망 시, 해당 신청서식 [별첨1]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 사업요약 계획을 제출해야 함 ⑤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과제는 1단계 사업기간 종료 후 평가를 진행하여 과제 수행 우수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성공적으로 사업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제에 한해 2단계 후속고도화 지원 과제를 지원함
--	---

* 지원규모,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과제 수는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기술사업화추진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 신청일 기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5년 이상(등록일 기준)의 연구소기업으로 아래 유형(일반형 또는 기술특례형)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1)~6)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유형	[유형1] 일반형	[유형2] 기술특례형
요건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억원 이상 2) 투자유치 10억원 이상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사업 수행 기업 4) 자기자본 10억원 이상 5) 기업가치평가금액 50억원 이상 6) 외부 전문평가기관에서 기술성을 인정받은 경우

- 1) 최근 3개년도 평균 매출액('19년~'21년)
- 2) 신청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유치한 누적 투자금액으로, '별첨1'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투자받은 실적('별첨1' 참고)
- 3) 데이터 댐, 지능형(AI)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 스쿨, 디지털트윈, 국민안전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매출 또는 계약 실적 등이 있거나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또는 '별첨2'의 공공연구기관 기술을 이전받은 경우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참고 : www.knewdeal.go.kr)
- 4) 연구소기업 전체 자본금 중 자기자본 10억원 이상인 경우('21년말 기준)
- 5) '별첨1' 투자기관으로부터 50억원 이상 기업가치로 투자받은 경우('별첨1' 참고)
- 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기관(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으로부터 TCB 5등급(T-5) 이상의 평가를 받은 경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하며,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적용기간 연장 검토

○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기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공기업
- 4) 상기 1)에서 3)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참고 : 현행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기타기업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5%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7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50%이내	연도별 해당 기관 연구개발비의 100%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다음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유형에 따른 현금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음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및 기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이상	연도별 해당 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이상	필요시 부담

-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임

*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임

* '기타기업'이란 위 1)중소기업, 2)중견기업 3)공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에서 정하는 분야의 경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초과계상 가능
-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별표2 참조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2022년도 정부 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을 준용하여 기존인력 또한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억원의 R&D 과제를 총 2년 동안 수행하는 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2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6억원이므로 총 1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5억			3.5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채용 사례	1명					

□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180일) 이전(2021년 8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으로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 납부금액 : 과제 관련 매출액(원) × 기술기여도(%) × 요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요율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2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10%)	(과제관련 매출액(기술기여도)의 5%)
과제관련 매출액	• 과제수행 기업의 매출액 중 사업화 과제의 결과를 활용하여 적용된 제품·용역의 매출액		
기술기여도	• ‘수익매출액’ 기준에 따른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점유하는 비율과’ 전체 연구개발활동 중 정부 R&D 투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으로 정한 비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 시 정하며,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사업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해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액이 다음의 납부 상한액을 넘지 아니함

구분	공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납부액 상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를 따름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2.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중소기업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의 감경

-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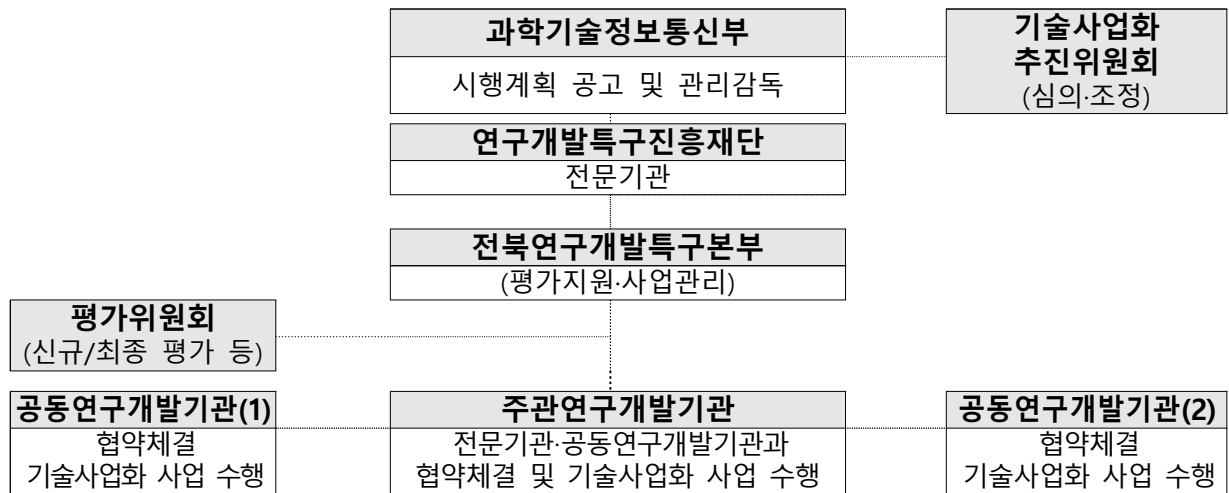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 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중(%)	계
기술성 및 혁신성	사업화 기술·사업모델의 독창성 및 차별성	10	30
	기술의 혁신성 및 경쟁력(원천기술 및 삼극특허 보유 등)	10	
	기술개발 고도화 목표수준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10	
성장 가능성	기업 성장목표(매출, 고용 등)의 도전성 및 적절성	10	35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의 성장 가능성	15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경영진의 역량	10	
시장성	수익모델의 적절성 및 주력시장 규모의 성장(확대) 가능성	10	35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15	
	정부정책(한국판 뉴딜 등) 연계성 및 사회적 가치 창출 정도	10	
합 계		100	100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이천기술의 권리보호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제출한 특허명세서에 기반하여 권리성과 관련된 항목을 사전검토시 분석하여 평가위원회에 제공 예정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 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하며 완전자본잠식 여부는 해당 기준에 따라 판별하도록 한다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제 선정 후 수행기간 동안 기술이전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구소기업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과제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단, 과제수행 중 기업공개(증권시장의 상장), 인수합병, 자금조달(투자유치) 등으로 인하여 연구소기업 등록 취소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신규과제 접수 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비교견적서 2개 포함)	서식 6호	3천만원~1억원 미만 장비구매 해당 시 장비별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10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1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과제신청일 기준 각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2	연구소기업등록증(등록신청서)	-	연구소기업 등록예정인 경우 연구소기업 등록신청서 제출
13	특허명세서	-	출자 및 이전기술 중 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특허의 명세서에 한함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K-선도 연구소기업 유형별 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유형1- ②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전자파일 (PDF) 업로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누적 투자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구분	서류명	제출형식	서식	비고
유형2-③	뉴딜 10대 대표과제 관련 수행 사업에 대한 요약서(자유양식) 및 관련 증빙자료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요약서 : 뉴딜 대표과제 관련성, 주요기술 및 사업아이템, 사업진척도 등 포함 ※ 증빙자료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및 납품계약서, 특허증, 기술이전계약서 등
유형2-⑤	투자계약서, 주주명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받은 건으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계약일 등 확인가능한 투자계약서
유형2-⑥	기술평가등급확인서		-	주관연구개발기관 제출 ※ 유효기간 내 서류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투자실적 인정 범위 (유형1-②, 유형2-⑤)

- 신청일 기준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아래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 투자계약, 주금납입 및 등기완료된 신규투자자에 한함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기관
 -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②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③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④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23에 따른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PEF)**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른 **엑셀러레이터**
5.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

2. 기업가치 산정 기준 (유형2-⑤)

- **주식투자** : 1주당 가격(투자액/주식수) X 총 발행 주식 수
- **전환사채 투자** : 주식 전환 가격 또는 투자심사 시 벤처캐피탈이 산정한 기업가치
- ※ **기준시점** : 신청일 기준 과거 2년간 투자 건을 기준으로 판단

별첨2

공공연구기관 범위 (유형2-③ 참고)

□ 공공연구기관 범위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에 따름

가. 국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특정연구기관 육성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적용기관)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대통령령)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산학협력단 포함)

2.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 사업에 드는 연간 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받거나 보조받는 법인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문 또는 과학기술의 연구·조사·개발·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7.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법인으로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동 조건에 포함되는 공공연구기관의 부설연구소(분원)도 포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전북특구 내 유망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을 발굴하여 초기 자금 투자 및 보육, 후속투자 연계로 기업의 성장 촉진

□ 사업내용

- 민간 엑셀러레이터를 선정하여 전북특구 내 유망 스타트업 발굴·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직접투자/후속투자 연계 등 종합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최대 400백만원 이내

- 2개 내외 수행기관 선정, 최대 200백만원 한도(정부출연금 기준)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 투자 기능을 갖춘 전문법인*(컨소시엄 구성 가능)

* 엑셀러레이터, 투자기관(창업투자회사, 벤처캐피탈), 엔젤(투자조합, 클럽) 등

□ 세부 사업내용

- 엑셀러레이터가 보유한 창업 인프라를 활용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 스타트업 보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종합지원

* 엑셀러레이터의 전문가(멘토링) 활동 비용, 교육 운영경비, 국내외 VC 및 엔젤투자자 대상 IR발표 등 스타트업의 선발-보육-투자유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규모는 수행기관이 제안한 운영규모 및 교육기간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음

- 멘토와 투자를 위한 파트너(엔젤, VC 등) 기관 등과 협력 네트워크 확보 및 투자연계, 직접투자 추진
- 액셀러레이팅 기법, 시장진출 전략, 성공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성과확산

< 액셀러레이터 지원 프로세스(안) >

창업 아이템 발굴	先투자 지원	보육·성장 지원	후속투자 연계 (Demo Day 등)
•예비창업자, 우수인력, 기업 발굴 •공공기술, 연구자	⇒ •엔젤, VC, 액셀러레이터 등 투자연계	⇒ •창업 및 보육·성장 지원 (경영·기술 자문, 투자유치, 연구소기업 창업 등)	⇒ •개발상품/서비스 시연 •투자유치의 장 기획

□ 액셀러레이터 수행 조건

구 분	세부 내용
구성원	· 공공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수행하는 기업의 임원급 근무 경험 또는 벤처기업 창업 등의 경력을 보유한 자가 멘토로 참여할 것 · 전담인력은 창업기업 발굴·투자·보육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을 보유
프로그램	· 1년에 25개 이상의 (예비)창업자·팀을 발굴하여 집중적 멘토링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계획 발표 및 아이디어 공유, 선배기업인 멘토링 등 예비창업자(팀)가 직접 참여하는 창업 준비 활동을 포함 · 탄소중립, DX, 디지털뉴딜 등 전략산업 분야 스타트업 적극 발굴 및 보육 · 액셀러레이팅 계획에 적합한 보육공간 확보 및 연계 계획 · 멘토 역할과 투자를 위한 파트너(엔젤, VC 등) 기관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보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시 및 운영(2회이상) 등(ex. 특화교육 및 보육 과정 등) · 국내외 대중견 기업과 네트워크 구축 및 이들과 연계한 IR 기획·운영 방안 제시
투자	· 창업자(팀)의 창업자금(pre-seed) 투자를 위한 적절한 펀딩 수단을 보유 · 전북특구에 즉시 선투자 가능한 펀드(자체/연계) 2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 · 창업자(팀)의 평균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을 제출 · 엔젤투자,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등 후속투자 유치 지원계획 제시 * 지역 주목적 투자 계정펀드, 특정 산업 분야 펀드 등 전북 투자 확률이 높은 투자 주체들과의 네트워크 포함 · 특구사업을 통해 발굴된 스타트업과의 투자연계 및 창업시 연구소기업 설립 유도 · 기업의 글로벌 진출 위해 해외 액셀러레이터와 공동사업 발굴 및 지원 등 · 직접 투자 및 후속투자 연계 전략 제시 필수

* 상기 목표는 필수 성과목표이며, 수행조건은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 과정에서 변경 가능

** 사업추진 과정에서 타 특구와 연계 또는 공동으로 추진하는 프로그램을 요청할 수 있음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등

- 정부출연금의 25% 이상 민간부담(현물), 간접비 불인정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수행기관 전문성	• 액셀러레이팅 전문 기관으로서의 적합성 • 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목표·추진체계의 적절성	20
	• 프로그램 운영 전담인력의 경험 및 관련 전문성	10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체계성	• 강사, 멘토 인력의 전문성 및 규모 적절성 • 예비창업자(팀) 및 기업발굴 계획의 적절성 •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20
	• 멘토링 및 네트워킹 운영지원 방안의 적절성 • 창업자 운영관리 및 후속지원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 성과창출을 위한 스타트업의 사후관리 방안의 타당성	20
스타트업 및 투자계획 적절성	• 창업팀당 투자규모 및 지분확보 계획의 적절성	10
	• 투자금 조성규모 및 엔젤/VC 투자기능 연계 방법의 적절성 • 엔젤, 벤처캐피탈 등과의 협력 및 후속투자 유치 방안의 적절성	2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1	수행기관 현물출자확약서	서식 7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2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첨단기술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성장 도모

☐ 사업내용

- 첨단기술기업의 수요에 기반하여 판로개척, 시제품제작, 컨설팅 등 맞춤형 집중 지원

2. 지원내용

☐ (총사업비) 100백만원

☐ (지원규모) 기업당 50백만원 내외 지원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특구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전북특구 첨단기술기업*

* 접수 마감일 기준, 첨단기술기업 지정이 유지되어야 함(지정기간 만료시 지원불가)

☐ (지원내용) 첨단기술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시제품제작, 시험분석, 인증·인허가, 판로개척 등 성장에 필요한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

지원분야	세부 지원내용(예시)
제품제작 및 시험분석	시제품 제작·보완 개선, 선도기업 제품 벤치마킹·접목, 기존 제품성능 및 품질 개선, 특화제품 개발 지원, 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분석 및 인증·인허가, 시제품 현장실험 등
판로개척	시장조사 및 BM수립, 국내외 바이어 발굴 및 유치, 기업홍보 영상, 제품디자인 및 브랜드 개발, 유망상품 기획, 수출자료제작 등
기 타	IR자료 제작, 지재권 취득 및 선행기술조사, 사업화 아이템을 위한 전략 수립 등 기업수요에 맞게 신청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인건비 : 본 과제는 인건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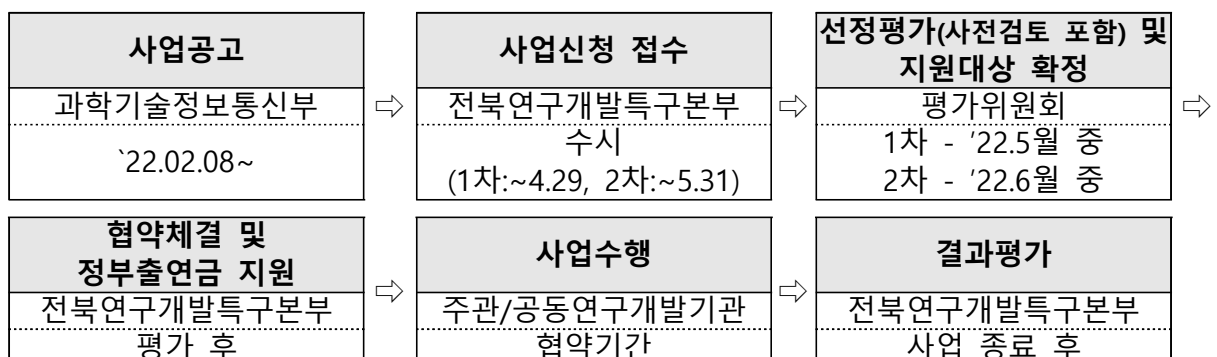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 (신청기업) 사업수행, 사업수행 보고

□ 추진절차



* 상기 추진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협약관련 세부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사업내용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15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5
내부역량, 추진전략 등	•첨단기술기업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20
	•사업추진 전략의 구체성 및 사전 준비정도	20
기대성과 성공가능성 등	•사업지원 후 고용 및 매출증대 등 기대성과	20
	•사업일정 및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관련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교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접수*(2차 접수 신청 전 담당자 문의 요망)

- 1차 접수마감 : 2022. 04. 29(금), 15:00까지

- 2차 접수마감 : 2022. 05. 31(화), 15:00까지

* 사업비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신청 건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평가 진행 예정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3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모든 기관 제출
4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 신청과제 중복성 검토 등	서식 3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4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6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5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6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추정재무제표(가결산) 제출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제출
10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1	첨단기술기업 지정 증명서류	-	-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획경영실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최진희 연구원	063-905-9743	skyhee10@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수행기관 부적격으로 탈락한 과제인 경우, 수행기관 변경 및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제작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 취소 및 추후 본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사업화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사업화 장애 / 성장정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사업화 성과 극대화 및 우수 성장사례 창출

□ 사업내용

- 성공적인 시장진입 및 사업화에 필요한 수요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20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전북특구 기술사업화 기업*을 대상으로 판로/기술/경영/인증 등 분야별 애로해결 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컨소시엄 가능)

*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적인 추진(사업화제품 매출발생, 양산화 등)이 필요한 전북 특구내 기술사업화 기업(R&BD 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전북특구 사업화기업, 첨단기술기업 대상 사업화 장애요인, 경영애로 수요발굴	기업별 애로분석 및 솔루션 도출	맞춤형 애로해결 지원 (기술/판로/자금/기타 등)
기업수요(설문)조사, 유관기관 추천 등	기업현황 및 수요분석(1:1 인터뷰 등), 솔루션 진단	기업수요처 발굴·매칭, 시장진입(마케팅, 입점)컨설팅, 전문가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 (수요발굴) 제품개발·고도화, 시장진입, BM재설계 등 사업화 추진 및 혁신성장에 솔루션이 필요한 특구내 사업화 기업 발굴

- (기업진단/분석) 발굴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환경 및 사업화역량·문제점, 애로사항을 분석하고 1:1 심층 지원전략 마련
- (맞춤형 컨설팅) 기업별 수요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 ◆ (판로) 사업화기업의 국·내외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진출, 대형 수요처 연계(협업이음), 우수조달 등 판로개척 프로그램 기획 및 집중지원
 - ◆ 기술, 자금, 시장조사 등 기술사업화 경영 전반에 대한 애로해결 지원
 - (기술) 공공기술 추가매칭, 사업화전략 재설계, 지재산 방어전략 수립 지원 등
 - (자금) 투자IR 자료 보완, 투자처 연계, 사업계획서 검토·보완, PT 지원 등
 - (기타) 기술/시험인증 컨설팅, 시장조사, 기타 기업 유용정보 제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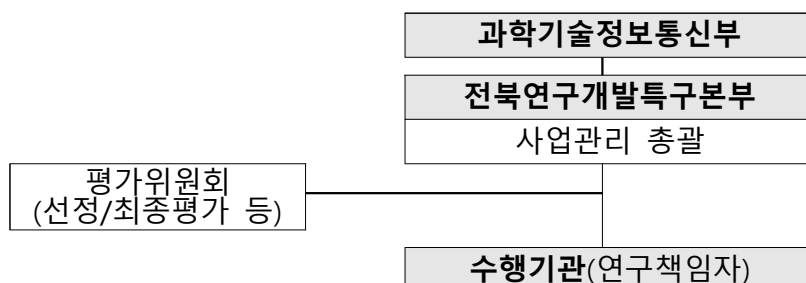
※ 수행기관 성과목표는 '신청서식' 참조

- (연계지원) 특구육성사업(사업화과제, 시제품제작, 투자연계 등) 및 타 기관 지원사업 등과 연계하여 후속지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 및 기업 발굴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화 애로 분석 및 솔루션 도출, 대형 수요처 발굴 및 시장진입(마케팅, 입점 등)을 위한 판로개척 등 지원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5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준비 정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체계 등	20
	○ 사업 추진방안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타당성, 업무분장(R&R)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추진계획 실현가능성 등	20
사업수행능력 (35)	○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 수행기관 전문성, 수행조직/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25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성과	10
사업운영, 사후관리(15)	○ 세부 추진일정, 사후관리방안 적절성 및 사업추진 성공가능성	15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속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속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저탄소·디지털 등 미래 주력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전라북도 혁신성장의 발판 마련

☐ 사업내용

- 탄소중립 및 디지털 뉴딜 분야의 기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지원규모 : 기업당 5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수시접수로 사업비 소진시 조기종료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

* 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디지털 뉴딜 분야 제품·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는 전북특구 기업** 또는 연구소기업***

* 사업화 대상 공공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약 체결 또는 기술이전 추진에 관한 확약사항이 증빙되어야 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공고일 기준 전북특구 내 경영활동 중인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등록된 전북특구 소재 연구소기업 또는 등록 예정인 연구소기업(단, 등록 예정 연구소기업의 경우 지원과제로 선정될 경우 협약체결 이전에 연구소기업 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참고] 탄소중립 및 디지털 뉴딜분야 예시 (※ 기재된 내용 이외에도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분야에 부합하는 제품·기술개발인 경우라면 지원 가능)

구분	기술분야			
탄소중립	에너지	태양광 풍력 수소생산·저장·이송 발전용 연료전지 전력저장 전력망 바이오에너지 에너지통합연계시스템 수소암모니아발전 청정화력발전 열생산·변환 시스템 등	산업	자원순환형 초고속 전기로 철강부산물 업사이클링 저탄소 고로·전로공정 석유화학공정 전기화 바이오 기반 원료·제품생산 페플라스틱 산업원료화 시멘트 혼합재 활용 석회석 원료대체 대체연료적용 원료공정대체 공정에너지효율화 등
	수송 교통	전기차용 이차전지 전기차 에너지 효율화 전기차용 전기충전 수소전기차용 연료전지 등	건물· 도시· ICT	화석연료대체 건물에너지 기자재 친환경·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신재생 건물에너지 설비 최적화 고성능·다기능 외피 등
	환경	자원순환형 혁신소재 자연기반 흡수증진 유용자원 회수 등	CCUS	CO ₂ 포집 CO ₂ 저장 CO ₂ 활용 등
디지털 뉴딜	Data, Network, AI, 핀테크, 스마트의료, 메타버스, 클라우드, 디지털트윈, 블록체인·IoT 등			

□ 지원내용

- 상품화 기술개발(Mock-up, 시제품개발, 시험분석, 성능인증 등) 및 상용화 (신뢰성평가, 마케팅 등) 지원, 전문컨설팅, 기술지도·자문 지원*

* 제품/기술개발 관련 공공연구기관 전문인력의 기술지도/자문이 필요한 기업은 전북 특구본부에서 매칭·연계 지원(사업비내 기술지도/자문비 산정 가능)

** 기업수요에 따라 세부 지원내용은 자율적으로 제시 가능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현금부담(중소기업 기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 ¹⁾ 인 경우	중견기업 ²⁾ 인 경우	공기업 ³⁾ 및 대기업 ⁴⁾ 경우	그 외의 경우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정부출연금의 15% 이상	필요시 부담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 제5조 4항 제1호에 따른 기업

□ 인건비 : 본 과제는 인건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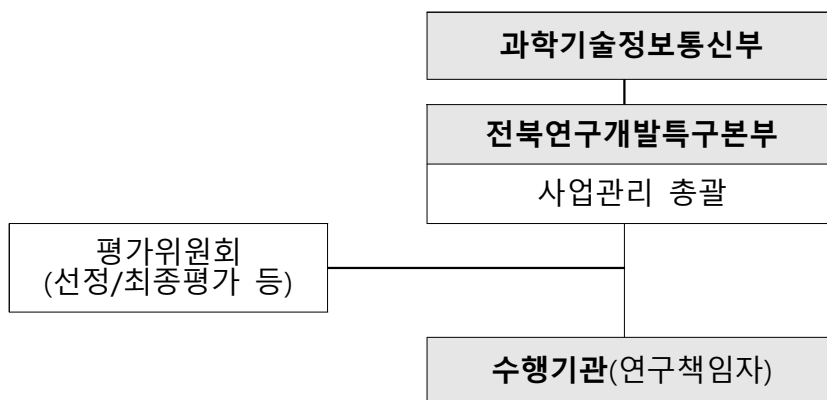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본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계획 공고 및 관리감독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사업계획 수립, 기업선정 등 사업수행 총괄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결과 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수시접수 (1차:~4.29, 2차:~5.29)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1차평가 : 5월중 2차평가 : 6월중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평가후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사업종료 후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4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준비 정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체계 등	15
	• 사업 추진방안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타당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추진계획 실현가능성 등	15
사업화 역량 (40)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추진 역량	15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이전/출자기술 활용의 적합성	10
	•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15
사업운영, 사후관리(20)	• 신규고용 및 매출액 등 경제적 파급효과	10
	• 사업화를 통한 탄소중립 또는 디지털뉴딜 연계성 및 파급효과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에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나.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금)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1차 접수기한 : 2022. 04. 29(금), 15:00까지
 - 2차 접수기한 : 2022. 05. 31(화), 15:00까지

* 1차 및 2차 마감 후 접수할 경우 담당자 사전문의 요망, 예산소진시 마감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번호	서류명	서식	비고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8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9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10	중소/중견기업확인서* ※ 신청일 기준 해당기업의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해야 함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규모별 확인서 발급 (비영리기관 제외)
11	연구소기업 등록증 (예정 기업은 등록 신청서 제출)		해당시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원종학 연구원	063-905-9753	memoret147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특구기업, 사업화기업의 제품 양산시 필요한 기술애로 해결 및 제품에 대한 신뢰성·안정성 확보를 통해 시장진출 활성화

□ 사업내용

- 신뢰성 및 품질향상 제고를 위해 기술·개발제품 효과 검증, 성능 평가, 시험 인증 및 맞춤형 컨설팅·교육 등을 지원

+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연간 100백만원(정부출연금 기준) / 수행기관 1개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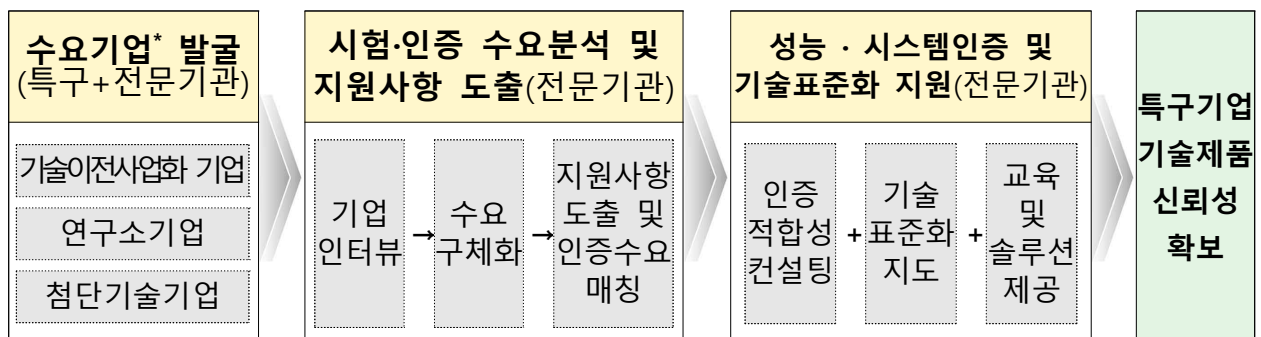
□ 신청자격 : 해당 사업에 대해 역량을 보유한 전문 인증·시험평가·컨설팅 기관(권소시험 구성 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특구기업 실용화 검증 지원 사업 프로세스(안) >



- 전북특구본부 및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수요기업*을 발굴·애로청취하고 기술 및 제품개발현황 분석 등을 통해 시험·인증수요 도출

* 공공기술 사업화 성공적인 추진(사업화제품에 대한 매출발생, 양산화 등)이 필요한 전북특구내 기술사업화 기업(기술이전사업화 추진기업,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 기업별 1:1 맞춤형 성능·시스템 인증취득을 위한 기술인증컨설팅, 기술표준화지도, 전문교육 및 솔루션 제공 등 표준화 과정 지원

* 탄소중립, 디지털뉴딜 등 전략적 추진과제와 관련성이 높은 기술인증 분야 포함

- 시험·검사 및 성능평가, 각종 시험분석 지원 및 관련 기술에 대한 기술지도 컨설팅 지원
- KS, KC, NEP, NET, 성능인증, 우수조달 등 국내인증 및 CE(유럽), UL(미국), CCC(중국), SG(일본) 등 해외인증에 대한 인증지원 및 기술문서 컨설팅 지원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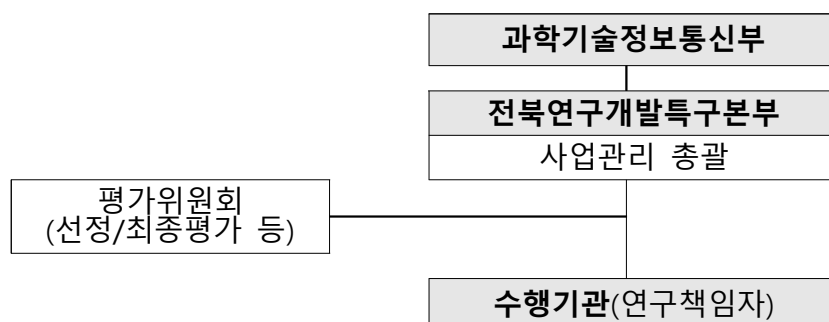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업 발굴, 실적관리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결과 보고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필요성(50)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세부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전략 및 사전준비 정도 - 추진전략의 타당성, 사업수행을 위한 준비체계 등	20
	○ 사업 추진방안 타당성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의 타당성, 업무분장(R&R) 적정성, 사업추진의 효율성, 추진계획 실현가능성 등	20
사업수행능력 (35)	○ 수행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및 역량 - 수행기관 전문성, 수행조직/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운영계획 - 유사 사업 수행 실적 등	25
	○ 관련분야 수행실적 및 성과	10
사업운영, 사후관리(15)	○ 세부 추진일정, 사후관리방안 적절성 및 사업추진 성공가능성	15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전문기관 증명서류(인증, 시험평가 등)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김미영 연구원	063-905-9752	mykim94@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혁신,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전북특구 육성전략 및 신규 사업화 아이템 마련을 통해 대내외 정책·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 사업내용

- 전북지역 혁신자원의 분석·결집을 통해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 및 전략분야 사업화 아이템 도출

2.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00백만원 이내(정부출연금 기준) / 1개 수행기관 선정

* 지원규모(정부출연금)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자격 : 해당 사업에 대한 역량(기획, 네트워킹 등) 및 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기업

* 선정기관은 사업추진을 위한 전북지역 업무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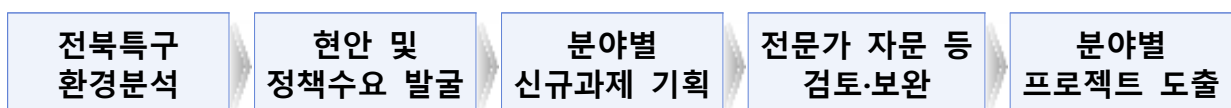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 협약 일정 등 사정에 따라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전북특구의 성과·지역현안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술/산업 분야별 전문가 협업 등 다각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전북특구 육성을 위한 신규 아이템 기획 및 지역혁신 과제 발굴

< '22년도 혁신성장 클러스터 육성 프로세스 >



- (환경분석) 전북특구 육성 성과·실적을 분석하고 대·내외 환경(산업 구조, 사업화 환경, 정책) 및 핵심이슈 등을 진단
- (현안발굴 및 기획) 워킹그룹 운영, 인터뷰, 공모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주요현안,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 혁신주체의 수요에 기반한 사업화 프로젝트 기획 →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과제 확정

< 프로젝트 기획(안) 유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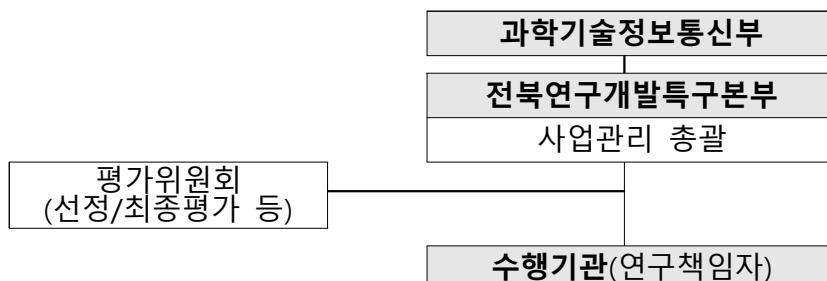
- ◆ (사업화 프로젝트) 전북특구 활성화를 위한 기관간/특구간 협력프로그램 기획, 사업화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신규사업 도출 등
- ◆ (전북특구 미래산업 도출) 정부정책(국정과제), 지역수요 및 현안, 기업/연구 인프라 기반 사업화 아이템 기획 및 협력구조 구상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

※ 상기(안)은 예시이며, 전북특구와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전북특구 사업전략 및 육성정책 등 기획 관련 상시 자문 지원
- ☐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100% 정부출연금 지원
- ☐ 연구개발성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해당없음
- ☐ 연구개발과제수의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64조2항에 따른 '제외과제'

3. 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 기획 및 관리 총괄, 사업공고
 -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 및 기업 발굴 등 사업 수행총괄
 - (수행기관) 사업수행, 사업결과 보고 등



□ 추진절차 및 일정

절 차	일 정	주요내용
사업공고	'22.02.08 ~'22.03.10	- 모집 공고
신청서 접수	'22.02.21 ~'22.03.10	- 사업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22.3월	- 서류검토/평가위원회 개최
협약체결	'22.4월	- 평가결과 통보/이의신청 및 사업계획서 보완/협약체결
사업수행	협약기간	- 사업수행
최종평가 및 정산	-	- 결과보고서 제출, 발표평가 및 정산보고서 제출

* 상기 일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평가항목 · 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비중(%)
사업목표 및 사업내용	•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10
	• 사업 추진방안의 타당성	10
내부역량, 추진전략 및 사업실적	• 수행기관(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10
	• 전북특구 이해도와 사업추진 전략, 사전 준비정도	25
	• 수행기관의 기술이전 사업화 추진 실적	15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 업무분장,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특구 타사업과의 연계 전략	15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사업추진의 성공가능성	10

* 상기 평가기준은 일부 변동 가능

□ 평가방법

-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 신청과제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평가점수 60점 이상(단독 신청한 경우 70점 이상) 중 고득점 순으로 협상 진행

-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우대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공통사항	
가.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 연락처(사무실, 휴대전화, 이메일 등)로 요청할 수 있으며, 수정 및 보완 요청한 기한 내에 응하여야 함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관련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 신청방법 : 연구개발특구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 통해 신청

☐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2. 02. 08(화) ~ 2022. 03. 10(목)
- 접수기간 : 2022. 02. 21(월) ~ 2022. 03. 10(목), 15:00 까지

☐ 제출서류

- 해당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PMS에 업로드

* 사업계획서는 한글파일과 PDF본을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번호	서 류 명	서식	비고
1	사업계획서	서식 1호	주관연구기관 제출
2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모든 기관 제출
3	표준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표준재무제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 발급분	-	최근 3개년도('19 ~ '21) (비영리기관 제외)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최근년도기준, 모든 기관 제출
5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증명서류		해당하는 신청자격 증빙서류
6	수행기관 의무이행 서약서	서식 2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 3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8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동의서	서식 4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서식 5호	모든 기관 각각 작성하여 제출
10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 6호	모든 기관이 날인하여 제출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추정재무제표(가결산)를 제출한 기관은 신규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 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 시 주의사항

-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 신청자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 전산 등록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사업관리시스템(<https://pms.innopolis.or.kr>)에 로그인 하여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제출
 -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문의처

- 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전북특구본부 기술사업화팀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강보라 연구원	063-905-9755	kangbr@innopolis.or.kr

6. 기타사항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15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선정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전북특구본부와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관에게 있음